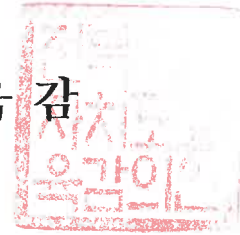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7. 3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8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로, “기능
강화와 진흥을 통하여”를 “기능을 강화하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

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도서관진흥”을
“학교도서관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u>서비스 제공을 통하여</u>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u>기능강화와 진흥을 통하여</u> 지역 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u> ----- <u>기능을 강화하고</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 ②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	제4조(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① ----- ----- 학

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 8. (생략)

② (생략)

교도서관 발전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구 수정(안 제1조)
- 표시 정비 및 조례 내 사용되지 않는 용어 삭제(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으로 정비